

공 주 시

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776호 2021. 10. 13.(수) 수시분

【공 고】

제2021-2070호 공주시 법령 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입법예고 3

회 람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공주시 (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☎ 041-840-2541)

《시보발행안내》

본 「시보」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의 제정 및 개·폐사항, 인사, 공고, 고시, 의회의 집회, 개최, 휴회 및 회기의 연장,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매월(1일, 15일)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.(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)

보급(배부)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(배부)됩니다.

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「시보」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주시 공고 제2021 - 2070호

「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0월 13일

공 주 시 장

공주시 법령 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(입법방식의 유연화) 과제를 법제부서에서 일괄 개정하여 법적합성 제고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
- 정부합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목표실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: 5개 조례

연번	자치법규명	대상 조문	개정이유	개정사항	소관부서
1	공주시 시설관리 공단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제9조	제한된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, 기본권 침해 등 → 해당규정 삭제	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2. <u>피한정후견인, 피성년 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</u>	기획예산 담당관
2	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	제14조	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할 수 있음 → 전대금지 규정 삭제	제14조(위탁의 취소)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 3. <u>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</u>	문화체육과
3	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제31조	관리위탁된 행정재산의 경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할 수 있음 → 전대금지 규정 삭제	제31조(수탁자의 의무)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 3. <u>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</u>	경로장애인과
4	공주시 박동진 관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	제7조	"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④ <u>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 으며,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</u>	문화재과
5	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7조	"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③ <u>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,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</u>	문화재과

○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: 3개 조례

연번	자치법규명	대상 조문	개정이유	개정사항	소관부서
1	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제22조	‘사회적경제’ 조직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등 지원사항을 3종으로 한정되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 필요 → 4호 신설	제22조(홍보 등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<u>4.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</u>	주민공동체과
2	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	제8조	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특정 항목에 한정되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 필요 → 8호 신설	제8조(재정지원)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,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·법인·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u>8. 그 밖에 에너지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</u>	경제과
3	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제14조	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대상 범위를 2개 분야에서 추가 확대 → 3호 신설	제7조(자금의 지원 대상)제 6조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<u>3.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</u>	경제과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(참조 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 등

○ 제출내용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제출자 성명 (법인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: 공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(의회법무규제팀)

주소 :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/ 우편번호 : 32552

전화 : 041-840-2029 / FAX : 041-840-2306

4. 참고사항

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(www.gongju.go.kr) 고시·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견

입법예고(안)	의 견(안)	사 유

의견제출자

- 성 명 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:
- 주 소 :
- 연락처 :

기타 참고사항 :

제 출 처 :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규제팀(☎ 041-840-2019)

제출방법 ㄱ 우편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(봉황동 319) (우편번호 32552)
ㄴ FAX : 041-840-2306

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**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**”을 “**피성년후견인**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**재산을 전대하거나**”를 “**재산의**”로 한다.

제3조(「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항제3호 중 “**재산의 전대 또는**”을 “**재산의**”로 한다.

제4조(「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**양도하거나 전대**”를 “**양도**”로 한다.

제5조(「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양도하거나 전대”를 “양도”로 한다.

제6조(「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

제7조(「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그 밖에 에너지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「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(생략) 2. <u>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</u> 과 <u>파산선고</u>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~ 5. (생략)	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피성년후견인</u> -----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
**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1.·2. (생략) 3. 수탁자가 수탁한 <u>재산을 전</u> <u>대하거나</u>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. ~ 6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14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재산의</u> --- 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**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위탁의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수탁한 <u>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</u></p> <p>4.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1조(위탁의 취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재산의</u> ----- -----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**공주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<u>양도하거나 전대</u>할 수 없으며,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양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**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생략)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타인에게 <u>양도</u> 하거나 <u>전대</u> 할 수 없으며,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양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**공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신 · 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홍보 등)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홍보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</u>

	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